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찰관서의 장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열람 근거 마련 등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16호)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64호)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14호)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43호)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72호)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81호)
- 허 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34호)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90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개요	1
II. 검토 의견	12
1. 아동의 자산형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 등(이수진의원안)	12
2. 경찰관서의 장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열람 근거 마련 (한병도의원안)	18
3.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등(송옥주의원안)	22
4. 정서적학대행위 개념 구체화 등(백승아의원안)	27
5.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범죄예방업무 등 필요조치 의무화 (김태호의원안)	40
6.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김도읍의원안)	45
7.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강화(허영의원안)	52
8. 학교 등 취업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절차 간소화 (정성국의원안)	58
※ 참고자료	62
1. ‘종사제한범죄’(김도읍의원안 관련)	62
2. 지자체 합동평가 개요 및 2023 아동급식 관련 평가지표(허영의원안 관련) ...	67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071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20.

(3) 회 부 일 : 2024. 6.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약 23만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의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자산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2.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076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21.

(3) 회 부 일 : 2024. 6.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고,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할 경우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못하는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출동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현장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 2).

3.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21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1.
- (3) 회 부 일 : 2024. 7. 2.

나. 제안이유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러한 아동 돌봄을 위하여 마련된 시설로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하며,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하는 역할을 함.

그러나 다함께돌봄센터는 '24년 5월 기준 전국에 1,130개소에 불과하여 영유아 보육 지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부족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며, 아동이 거주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야 함(안 제44조의2).

4.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44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승아의원 등 46인
- (2) 제 안 일 : 2024. 7. 5.
- (3) 회 부 일 : 2024. 7.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여 학교와 가정은 물론 사회에서 청소년 안전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지도를 기피하고 있음. 이는 선의의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해 받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며,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8조의2).

5.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57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10.
- (3) 회 부 일 : 2024. 7.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아동이 학교에 매일 다니며 이용하는 등하굣길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으로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사각지대로 놓여, 아동의 등하교 시에 유괴 등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의 후속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등하굣길을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6.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68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4. 7. 12.
- (3) 회 부 일 : 2024. 7.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종사자는 부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청소년지도사 중 가운데 경력자이 있는 사람이 종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나 종사자의 별도 결격사유는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과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교 전후 또는 야간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체험활동을 비롯해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아동과의 장시간 또는 지속적인 대면접촉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안전한 아

동의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종사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살인 범죄 및 아동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마약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보다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7. 허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73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허 영의원 등 18인
- (2) 제 안 일 : 2024. 7. 15.
- (3) 회 부 일 : 2024. 7.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그간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의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학교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낮은 지급단가, 사용처 부족 등으로 인해 급식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심각함.

또한 자율적 아동급식제도 운영을 위해 아동급식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모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별 급식 수준의 편차가 큼.

이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가가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성장기 아동이 마음 편히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5조).

8.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09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성국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7. 22.
- (3) 회 부 일 : 2024.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음.

하지만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일정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학교에서 인력 채용 시 동 업무를 교원이 담당함에 따라 행정업무과다로 인해 본질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됨은 물론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실정임.

한편,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성범죄의 경력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으며, 현재 교육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는 정비되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조

회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II. 검토 의견

1. 아동의 자산형성에 관한 정부의 역할 강화 등(이수진의원 안 제42조 등)

□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아동의 계좌에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금액은 인출할 수 없도록 함(안 제42조 등).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1의2. (생략)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 5. (생략) ②·③ (생략) <u><신설></u>	제38조(자립지원) ① ----- ----- ----- ----- -----. 1. 1의2. (현행과 같음) 2. ----- -----지원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제2절의2 자산형성지원</u>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정부는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u>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하는 사업(이하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는 인출할 수 없다. 다만, 아동의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절차, 지급의 정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u>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u> 3. ~ 5. (생략) ③ (생략)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 제42조¹⁾를 근거로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① 위탁 가정·아동복지시설·전문치료기관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 ②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③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으로 정하고 있음²⁾.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대상 아동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이하 수급가구 아동
기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의 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아동이 일정금액을 적립(월 최대 적립금액 50만원)하면 국가 및 지자체³⁾가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아동 적립금액의 1:2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2007년 사업 시작 이후 대상 아동, 정부 적립금, 매칭비율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1)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아동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3.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계좌 개설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은행 등에 의뢰하고, 은행 등은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귀가하더라도 그 아동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 3) 지자체에 대한 국가 보조율: 서울(40%), 지방(70%)

<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내역 >

연도	구분	기존	변경사항
2011	대상 확대	보호대상아동으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의 만 12세 아동을 포함하여 확대
2016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13세로 확대
2017	지원금 확대	월 최대 3만원	월 최대 4만원으로 확대
2018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13세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17세로 확대
2020	지원금 확대	월 최대 4만원	월 최대 5만원으로 확대
2022	정부 매칭비율 확대	아동적립금 1 : 정부지원금 1	아동적립금 1 : 정부지원금 2
2024	대상 확대 소득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가구 연령 (만 12세~17세) 소득기준(생계·의료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연령 확대(만 18세 미만) 소득기준 완화(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자료 : 보건복지부

□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빈곤 상태 예방 및 사회불평등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목적에 더하여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국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 축적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안정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대응책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특히, 개정안은 보호자의 적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현행 아동과 정부의 적립금 매칭 방식이 아닌 정부 직접 적립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호자가 저축 여력이 없거나 적립을 적게 할 경우에도 정부의 적극적 역할로 일정 부분의 자산형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한편, 아동의 자산형성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2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안⁴) 및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⁵)이 회부되어 있는바, 정부적립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개정안별로 상이한 만큼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관련하여 강선우의원안은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임광현의원안은 월 10만원을 정부적립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14조 8,000억원씩 향후 5년간 73조 8,000억원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자산형성지원사업(제42조)	15.9	15.3	14.7	14.2	13.7	73.8	1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 외, 개정안에서는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추가지원 규정이 없는 데, 양육 부담 완화 및 저출산 해소 등을 위해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의 제도 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막대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는바, 재정투입 대비 출산율과 사회복리에 대한 효과성 검

4) 의안번호 제2200486호

5) 의안번호 제2200555호

토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경찰관서의 장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열람 근거 마련 (한병도의원안 제28조의2제5항 신설 등)

-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출동한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이 신속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현장출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일, 신고 접수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열람되는 정보는 제22조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신고 사항에 포함되는 정보로 한정한다.</u>
<u>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u>	<u>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u>

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u>외로</u>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u>및 제5항에 따른 열람 목적 외로</u> ----- ----- -----.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국가아동학대시스템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사건 접수 및 조사, 사례판단,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대응 업무 전반을 전산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 관련 사업별로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연계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2022.7.1. 시행),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중 아동학대 관련 개요 >

-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 (주요기능) 아동학대 사건관리(신고접수, 아동학대조사, 사례판단 결과 등), 피해아동 및 행위자 등에 관한 정보 입력·관리 등

* 자료: 보건복지부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경찰관서의 장, 어린이집 원장 등 아동학대 신고사건을 접수하여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거나, 아동과 밀접한 생활을 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 및 활용할 수 있음(제28조의26)).

□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신고접수일, 신고접수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장출동 업무 수행 시 사법경찰관리가 학대신고이력 등을 별도의 요청 없이 신속히 확인하여 초기 대응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취득한 피해 아동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조항은 현행 제28조의2제5항으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제71조제2항제1호7)).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현행 제28조의2제5항이 제6항으

6)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삭 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2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4의2.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71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로 변경되므로 이에 맞춰 벌칙 조항 중 ‘제28조의2제5항’은 ‘제28조의2제6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개정안과 관계되는 기관인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살펴 보면, 공통적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로 현장출동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아동학대 신고·접수 체계는 실질적으로 경찰(112) 신고로 일원화되어 있고, 경찰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출동 시 모바일로 시스템상 학대 신고이력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법률 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입장을 제시함⁸⁾.

8) 참고로 전남 고흥군에서도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로 현장출동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경찰-지자체 간 상호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출동 시 모바일로 시스템상 학대 신고이력 확인이 가능하므로, 정보제공 범위를 신고접수 사항으로 한정하는 경우 별도 개정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3.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등(송옥주의원안 제44조의2제1항 등)

□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u>운영할 수 있다.</u> <후단 신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 ----- ----- ----- ----- ----- <u>운영하여야 한다.</u> <u>이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u>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u>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현행법 제44조의2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방과 후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 개요 >

- (목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운영)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자체 설치·운영, 필요시 위탁운영 가능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현황) '23.12월 1,048개소(현원 25,637명, 종사자 3,476명) 운영

* 자료: 보건복지부

-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2018. 4.)에 따라 2018년부터 설치·운영되어 왔으며, 2024년 5월 말 현재 1,13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2020년 이후를 보면 당초 계획 대비 설치 실적은 대체로 70% 수준을 밑돌고 있음.

< 연도별 다함께돌봄센터 예산편성 계획 대비 설치 현황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월말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계획	17	150	350	450	450	208	129
	설치	17 (100.0%)	156 (104.0%)	251 (71.7%)	270 (60.0%)	187 (41.6%)	167 (80.3%)	90
	누적	17	173	424	694	881	1,048	1,138

* 자료: 보건복지부

- 9)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경과 >

- (근거마련)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사업 근거 마련('19.1.15. 개정, '19.4.16. 시행)
- (아파트 활용) 아파트 공간 활용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 신축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추진
 - * (설치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21.1.12., 개정 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하는 주택단지부터 적용)
- (어린이집 활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가능('20.9.1.~)
- (공공시설 활용) 다양한 공공시설 활용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19년 95건, '20년 44건, '21년 24건)
- (운영비 지원) '24년 운영비 월 100만원 지원
- (수탁기준 완화)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자 자격기준 완화('20년~,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계획에 비하여 가시적 증가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 확충을 유도하고 이용 아동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아동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운영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 초등돌봄 영역을 보다 촘촘히 하여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아동복지법」(제50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¹⁰⁾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¹¹⁾하고 있다는 점과, 강행규정으로의 변경에 따른 일률적인 다함께돌봄센터 증가는 국가

10)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아동복지시설은 아니나, 아동복지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포함되어 있음.

11)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고, 종사자 등 인력 및 설치 가능 유휴공간 등 관련 인프라 문제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¹²⁾」(대통령령) 개정 및 시행(2021. 1. 12.)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음.

이처럼 주택법령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금번 개정사항은 주택법령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선행될 필요도 있겠음.

- 참고로, 2021년부터 설치현황을 보면, 2024년의 경우 7월까지 4개소가 설치됨.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현황 >

연도	'21년	'22년	'23년	'24.7월
개소수	0	0	1	4

* 자료: 보건복지부

12) 「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대지조성기준
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②·③ (생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아동복지법」 제50조에 기타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 등에 따른 센터를 일률적으로 법령으로 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관계 부처 등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기타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 등에 따른 센터 설치 강제를 일률적으로 법령으로 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의무화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한 300세대 이상 설치 의무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전남 고흥군	군 단위 지방 소도시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조차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폐업하는 센터도 속출하고 있음. 아울러 노령 인구가 많은 관계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다함께돌봄센터’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기존 법률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구체화 등 (백승아의원안 제17조 제5호 및 제28조의2제7항)

□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그 개념을 구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며,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신고된 사람의 정보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등 권리보호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호 및 제28조의2제7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제17조(금지행위) ----- ----- -----. 1. ~ 4. (현행과 같음) 5. -----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다만,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초·중등

6. ~ 11. (생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 ⑤ (생략) <u><신설></u>	<u>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는 제외한다.</u> 6. ~ 11.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 대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보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u>
---	--

□ 첫째,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구체화와 관련된 것으로, 현행 「아동복지법」(제17조)은 금지행위로 정서적 학대행위 외에 신체적 학대행위, 유기·방임행위 외에도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제17조) 규정 >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 매매 행위	6. 유기·방임행위
2. 음란한 행위(매개 행위)·성적 학대행위	7. 장애아동 공중관람 행위
3. 신체적 학대행위	8. 아동을 이용한 구걸 행위
4. 삭제	9. 유해한 곡예 행위
5. <u>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u>	10. 아동양육 알선 금품 취득·요구 행위
	11. 아동에게 증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 먼저,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행위 도입 및 변경 경과를 살펴 보면, 제정 이후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하면서 아동학대의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2000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도입되었으며, 2021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하도록 개정¹³⁾되었음.

<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행위 도입 및 변경 경과 >

구 분	정 의
1962년 「아동복지법」 제정 및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부 개정	제18조(금지행위) 7. 아동에게 유해한 흥행·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행위 <u>9.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u> 11.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반포, 공여, 교환, 전시, 공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2000년 전부 개정	제29조(금지행위) <u>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u>
2021년 일부 개정	제17조(금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한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보면, 금지행위 중 정서적 학대행위의 발생 건수는 2018년부터 5,862건에서 2021년 12,35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10,632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아동학대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동 기간 23.8%에서 38%로 증가하여 왔음.

13) 아동이 가정폭력에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불안, 우울증, 자해행위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함(대안 제안이유)

<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 >

(단위: 건, %)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2018년	3,436	(14.0)	5,862	(23.8)	910	(3.7)	2,604	(10.6)	11,792	(47.9)	24,604	(100.0)
2019년	4,179	(13.9)	7,622	(25.4)	883	(2.9)	2,885	(9.6)	14,476	(48.2)	30,045	(100.0)
2020년	3,807	(12.3)	8,732	(28.3)	695	(2.2)	2,737	(8.9)	14,934	(48.3)	30,905	(100.0)
2021년	5,780	(15.4)	12,351	(32.8)	655	(1.7)	2,793	(7.4)	16,026	(42.6)	37,605	(100.0)
2022년	4,911	(17.6)	10,632	(38.0)	609	(2.2)	2,044	(7.3)	9,775	(34.9)	27,971	(100.0)

* 자료: 보건복지부

□ 정서적 학대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달리 유형력을 동반하지 않거나, 유형력이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는¹⁴⁾ 등 그 특성이 무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 행위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바, 주변에서 학대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워 그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런데, 정서적 학대행위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는바,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에 학대행위가 반복적·지속적일 것과 일시적·일회적이라도 정서적 학대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될 것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개념을 구체화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의 발생 기간 및 빈도, 학대행위의 정도를 추가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와 정당행위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 수범자인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현장 관계자의 이해 또한 제고¹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4) 대법원 2011. 10. 13. 2011도6015 판결 참조

15) 아동학대 현장 관계자가 정서학대 상황을 목격해도 훈육이었다는 보호자들의 항변이 현장전문가의 개입을 주저하게 만들어 해당 아동이 학대적인 양육 상황에 방치되고, 조기 발견을 통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현장전문가에게도 정서적 학대의 행위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란 의견이 있음. 장혜영, 「정서적 학대의 의의 및 판단 기준」, 『인권과

□ 참고로,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 및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헌법재판소¹⁶⁾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을 제시하였음.

< 대법원¹⁷⁾ >

정서적 학대행위를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다’고 판시하였음.

□ 다만,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성을 고려하면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및 심한 정도’라는 판단 기준만으로 전체 정서적 학대행위를 포괄할 수 있을지 아동에 대한 보호 범위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국제법으로서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24. 5.

16) 헌재 2015. 10. 21. 2014헌바266; 헌재 2016. 3. 31. 2015헌바264; 2020. 4. 23. 2019헌바 537 결정

1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 5769 판결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이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화·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 관련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를 보더라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외에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¹⁸⁾ >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 대법원¹⁹⁾ >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둘째, 개정안에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임.

□ 최근 정당한 교육 활동 범위 내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정당한

18) 헌재 2015. 10. 21. 2014헌바266; 헌재 2016. 3. 31. 2015헌바264; 2020. 4. 23. 2019헌바 537 결정

19)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 5769 판결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하여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등 정당한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교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원의 정당한 유아(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유기 및 방임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이 개정 및 시행(2023. 9. 27.)된 바 있음.

< 개정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내용 >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u>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u>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u>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u>

- 아울러, 「영유아보육법」도 「유아교육법」 등과 유사하게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중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유기·방임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개정(2024. 2. 6.)되어 시행(2024. 8. 7.)되고 있음.

< 개정 「영유아보육법」 내용 >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한편, 아동학대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최근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개정(2023. 12. 26.)되었음.

<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용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교원 보호를 위한 이러한 법률의 개정 흐름과 함께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와 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누구든지’ 아동을 학대할 수 없도록 이를 금지하고 있는 점²⁰⁾, 제외 행위의 기준과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다양

20)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대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한 행위 유형을 공백 없이 어느 정도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서적 학대 행위 인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겠음.

- 개정안의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구체화 등 부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판단하는 요소 중 반복성·지속성과 심한 정도만을 명시하는 것은 아동보호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정당한 생활지도 등을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관련법 개정 및 형사상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개정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 등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정서적 학대행위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반복성·지속성과 심한 정도만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포괄할 수 없어 아동보호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또한, 사회의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닐 것이며,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바 개정의 실익이 없음.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교육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에서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모든 학생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3조제5호의 단서를 신설하는 것에 동의함 * 교원단체(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등), 전국교사일동 주관 집회('24.2.17.) ※ 제17조제5호를 개정하는 정성국 의원안도 발의되어 있으므로 최적안 도출 필요 한편, 「영유아보육법(법률 제20219호)」 제18조의5제1항의 생활지도를 정서적 학대의 예외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각 행위들에 대해 횟수, 심각성 등의 정도를 정하고 있지 않고, 금지행위를 폭넓게 보아 아동과 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중검토 필요. 또한, 교권보호 4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목적이 달성되었음.
한국보육진흥원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관한 신설 조문(제18조의5, '24.8.7. 시행)도 안 제17조제5호 단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함.

□ 셋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 대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보호 조치 실시 의무 부과와 관련된 것임.

□ 개정안의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현행법상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입력·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자체장은 현장조사를 거쳐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내리며²¹⁾,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²²⁾에 입력·관리하여야 하는데²³⁾,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는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 사례가 아닌 경우 “일반사례”로 입력·관리

21)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3.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22)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3)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관리
2.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
3.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4.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5.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관리
6.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담·교육·치료 관리
7.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하고 있음.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주요 입력 정보 >

구 분	입력·관리 정보 주요 내용
아동학대 대상자관리	아동학대 피해로 신고된 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 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등)
아동학대 사건관리	아동학대 신고접수, 아동학대조사, 사례판단, 조치관리, 피해아동보호계획, 사례종결 등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대한 정보 관리
아동학대 사례관리	피해아동보호계획, 초기면접 및 사정, 사례관리계획, 서비스 제공, 심리 치료, 사례점검, 종결 후 개입 등 아동학대 사례 전반에 대한 정보 관리

*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현재 아동학대 사례 판단 자체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이의 제기 절차는 있으나²⁴⁾, 아동학대 및 일반 사례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정보는 영구보존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 대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내 피신고자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권리 보호 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경우 국민의 부당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겠고, 아울러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였으나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학대 신고 등이 있는

24)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는 당사자(해당 건의 피신고자)에게 서면으로 사례관리연계안내서를 통지하고 있는데, 사례관리연계안내서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실, 향후 사례관리(상담·교육·치료) 연계 계획 안내,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재판단 요청 절차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후 수사·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또는 무죄로 결정된 경우에는 당사자 요청 또는 지자체 직권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재판단 받을 수 있음. 지자체의 재판단 결과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신고자의 정보 등은 “아동학대 사례”에서 “일반사례”로 변경되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영구적으로 보존되고 있음.

경우 현장의 긴급 보호 및 아동학대 판단에 관련 정보가 필요한 점 등 아동 보호 측면에서 동 기록을 유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의 삭제’ 관련 부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의 범위가 다르고, 재학대나 반복적 신고 등의 경우 아동의 긴급한 보호에 동 시스템상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관계 부처 등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수사·사법기관의 아동학대범죄의 수사·판단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은 목적·취지가 다른 독립된 절차이고, 재학대, 반복적 신고 등의 경우 아동의 긴급한 보호 및 아동학대 판단 등에 동 정보가 필요하므로 수사·사법기관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무혐의·무죄 판단 등을 이유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곤란함. 다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범죄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명칭을 ‘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음.
교육부	아동의 성장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존중하나, 무분별한 아동학대범죄 신고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신고된 교원은 불명예, 정신적 피해와 함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으므로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하는 등 권리 보호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는, 아동복리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지원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판단과 행위자 처벌 관점에서 판단하고 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판단으로 구분되나, 이는 무조건 이분법적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며 처벌대상이 아동학대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복지적 관점의 아동학대판단과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음.
충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범죄혐의가 없더라도 관련 기록은 추후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이 됨.
경기도 시흥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정보를 삭제할 경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모두 삭제되어 신고된 자에 대한 과거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반복적·지속적인 신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예상됨.

□ 참고로,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아동학대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제외하며,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삭제하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대표발의)²⁵⁾」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25) 의안번호 제2200194호

5.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범죄예방업무 등 필요조치 의무화 (김태호의원안 제32조)

- 개정안에서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함께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이용 아동이 빈번히 보행하는 도로를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으로 포함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 ----- ----- ----- ----- -----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어린이집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다수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보행하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를 아동보호구역

1. ~ 4. (생략)	<u>으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u>절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② ----- ----- <u>절차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u> ----- -----.
	③·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2조²⁶⁾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주변구역(출입문 또는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도시공원의 관리자 또는 시설의 장이 지정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연간 아동범죄 발생현황, 시설 통학·이용 아동 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를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조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

26)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됨.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구역에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화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 아동보호구역 개요 >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2조
- (도입목적)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으로 아동 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확산에 대응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08~)
- (아동보호구역 범위)
 - 도시공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 어린이집, 초등학교(특수학교), 유치원: 해당 시설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 (지정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절차)

신청	조사	지정
도시공원 관리자 또는 시설의 장이 지정 신청	<조사 내용> · 연간 아동범죄발생현황 · 시설통학·이용 아동수 · 범죄발생 우려여부 등 <조사 절차> ·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필요한 자료 요청	<지정 기준> ·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절차> ·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필요한 자료 요청

- (아동보호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 범죄예방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재량)

* 자료: 보건복지부

□ 현재 전국의 아동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부산·인천 등 39개 시·군·구에 총 1,746개의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대구, 광주, 울산 등 7개 시·도(특별자치시·도 포함)에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

(단위: 개소, 대)

시도	시군구	시설별 (개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
		계	도시공원 (1호)	어린이집 (2호)	초등학교 특수학교 (3호)	유치원 (4호)	
서울	4개	241	105	6	125	5	5,061
부산	16개	203	15	50	121	17	2,372
인천	1개	16	0	6	6	4	16
대전	1개	150	66	35	23	26	982
경기	3개	782	7	728	47	0	7,828
강원	3개	47	29	4	14	0	118
전북	4개	101	39	18	28	16	308
전남	2개	50	0	11	37	2	105
경북	1개	24	24	0	0	0	138
경남	4개	132	46	20	65	1	586
합계	39개	1,746	331	878	466	71	17,514

*자료: 보건복지부 시도 취합자료(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제주: 없음)

□ 한편, 전국에 도시공원은 18,858개소, 어린이집은 28,954개소, 초등학교는 6,175개소, 유치원은 8,441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 중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비율도 각각 9.3%, 1.1%, 14.2%, 0.8%에 불과함²⁷⁾.

□ 참고로, 2022년 발생한 284건의 약취유인범죄 중 62.7%에 해당하는 178건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범죄였는데, 아동유괴범죄가 가장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시간대(12:00~17:59)로 전체범죄의 56.4%를 차지하였으며, 발생 장소는 노상(45.5%), 주거지

27) 도시공원수: 공공데이터포털, 어린이집·초등학교·유치원 수: KOSIS 통계

(24.7%) 였음²⁸⁾. 또한, 아동에 대한 실종 및 가출신고는 2021년 21,379건, 2022년 26,416건, 2023년 25,628건임²⁹⁾.

□ 개정안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여 전국 모든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등 주변 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설 주변 도로 등 아동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구역에 순찰 및 아동지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아동보호구역 지정 의무화가 되는 경우 경찰 순찰인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외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위한 재정 소요가 발생³⁰⁾하고, 순찰 증가에 따른 업무량 급증이 예상되는바 지자체 및 경찰청과의 면밀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모든 도시공원 등 주변을 의무적으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개별 지역의 위험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참고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범죄예방업무 등 필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³¹⁾)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28) 대검찰청, 2023년 『범죄분석』

29)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3

30) 제21대국회 유사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7,895억원이었음.

31) 의안번호 제2200516호

6.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김도읍의원안 제44조의2제5항 신설)

□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살인, 약취, 유인 등) 등의 ‘종사제한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u> 1.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이하 이 조에서 “종사제한범죄”라 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u>

<신 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 종사제한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종사자의 전력 조회에 대해서는 제29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종사제한범죄'로 본다. ⑦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의----- ----- -----.
--	--

- 현행법 제4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³²⁾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2의1(제21조의2 관련³³⁾)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선생님의 자격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청소년지도사로 일정 급수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의 경우 여기에 경력 요건을 추가하고 있으나, 종사자의 별도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선생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3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 ④ (생략)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살인범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인신매매, 마약류 관리 범죄 등(중사제한범죄: 참고자료 1)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중사제한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다함께돌봄센터 중사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교 전후 또는 야간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체험활동을 비롯해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그 중사자가 아동과 장시간 또는 지속적인 대면접촉을 하게 되는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에 있는 사람이나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중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이용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³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의 장 및 중사자에 대한 결격사유(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 「아동복지법」에서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금지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여 형집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중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조항을 두고 있어 다함께돌봄센터

3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아동복지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3. (생략)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 1의 4. (생략)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54조의2³⁵⁾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상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 외에도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인 지역아동센터³⁶⁾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유사한 성격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³⁷⁾에도 개정안과 같이 결격사유를 달리 규정할 경우 종사자의 혼란³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임.

- 다함께돌봄센터는 입법 당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독자적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과 별도로 규정되었으나, 종사자는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성격의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35) 제54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36)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 13. (생략)
- 37) 이용대상과 연령기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등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아동에게 제공하고 있음.

구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주체	개인 또는 법인/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설치현황	4,253개소('22년 말 기준)	881개소('22년 말 기준)
아동현황	109,044명('22년 말 기준)	19,226명('22년 말 기준)
이용대상	우선돌봄아동(50% 이상)* 및 일반아동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가구 등	일반아동 * 맞벌이부모 가정 아동 중심
연령기준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만6세~12세 아동(초등학생)
자부담	무료 (일반아동은 월10만원 내 프로그램비 부담 가능)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 센터(지자체) 자율 부과

3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중 다함께돌봄센터 종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에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초등돌봄시설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다함께돌봄센터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 사유의 입법례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임.

7.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강화 (허영의원안 제35조)

☐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급식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아동 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임(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5조(건강한 심신의 <u>보존</u>) ①·② (생략)	제35조(건강한 심신의 <u>보존 등</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 .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급식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생략) <u><신설></u>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할 수 있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u><신설></u>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⑤ (생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 현행법 제35조³⁹⁾에서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05년 아동급식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을 통해 급식지원단가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의 준수를 권장하고 있는바, 2024년 기준 1식 9,000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식사업의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등임.

<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요 >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에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 부과
- '05년 지방이양에 따라 지원기준·방법·절차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 *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을 통해 급식단가 등 권고
-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총 277천명('23년)
 -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39)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급식대상자 현황(단위 : 명) >

연도	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23년	277,394	164,509(59.3%)	14,323(5.2%)	98,562(35.5%)
'22년	283,858	165,698(58.4%)	15,328(5.4%)	102,832(36.2%)
'21년	302,231	173,008(57.2%)	17,224(5.7%)	111,999(37.1%)

* 한부모, 긴급복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아동센터·복지관 이용 등

○ (지원내용) '24년 기준, 1식 9,000원 이상 지원

○ (시행주체) 교육청과 지자체 재원 분담·지원

구 분	학기 중				방학중, 연중
	평일		토·공휴일		
	조·석식	중식	조·석식	중식*	조·중·석식
기관명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 학기 중 주말·공휴일 중식은 지자체에서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

** 아동이 원하는 급식지원 유형(조·중·석식)을 선택하나, 평균 1일 1~2식 제공

○ (전달체계) 개인 신청, 지역사회 발굴·추천(읍면동, 시군구 등) → 대상자 접수·자격기준 조회 및 결정(시군구) →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전달

*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2021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급식단가 최저기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 부재, 지원단가 준수 여부 등 실태 점검의 필요성, 지자체별 아동급식의 편차 발생 등 아동급식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한 바 있고, 2021년 12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지원단가를 결정하고, 급식 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음.

< 권익위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 권고 주요내용 >

□ 추진 배경

- 결식우려 아동에게 마음 편하게 다양한 곳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지원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 중
 - 낮은 아동급식 지원단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안 마련

□ 권고(안) 주요내용

- (단가 법적근거) 국가가 전국적 최소한의 지원단가 최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아동복지법 개정) ⇒ 복지부

- (현황·실태조사 근거 등) 지원단가 준수 여부, 급식카드 운영·관리 등 지원 실태를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아동복지법 개정)⇒ 복지부
- (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지자체에서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푸드코트 등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 지자체
- (가맹점정보 공공데이터 공개) 가맹점 위치,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행안부 공공정보 포털(data.go.kr)에 공개 ⇒ 지자체
- (가맹점 마크 개발) 티 나지 않게 방문하여 식사할 수 있으면서 가맹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 등 문양 개발 ⇒ 복지부
- (가맹점 등록 간소화) 음식점 등 사업자가 지자체 홈페이지, 이메일 등 온라인 가맹등록 신청 가능토록 개선 ⇒ 지자체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금번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급식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지자체의 급식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 지자체를 보상하려는 것으로, 아동 급식사업의 지자체 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간 지원의 형평을 기할 수 있고, 급식지원 현황에 대한 주기적 조사·점검을 통해 급식지원에 필요한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중 국가가 재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급식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지원사업이 2005년 지방이양되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규정⁴⁰⁾된 점을 고려하여 원만한 입법을 위해서는 소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시·

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사업
100.	결식아동 급식

도별 지원 단가를 보면 2024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권장 단가 (9,000원 이상)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최근 4년간 시·도별 급식지원 단가 >

시도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	6,000	7,000	8,000	9,000
부산	7,000~9,000	7,000~9,000	8,000~9,000	9,000
대구	6,000~9,000	7,000~9,000	8,000~9,000	9,000~10,000
인천	5,000	7,000	8,000	9,000
광주	6,500~7,000	7,000	8,000	9,000
대전	6,000	7,000	8,000	9,000
울산	6,000	8,000	8,000	9,000
세종	6,000	7,000	8,000	9,000
경기	5,000	7,000	8,000	9,000
강원	7,000	7,000	8,000	9,000
충북	5,000~7,000	6,000~7,000	8,000	9,000
충남	5,000~6,000	6,000~7,000	8,000	9,000~10,000
전북	6,000~8,000	7,000~8,000	8,000	9,000
전남	6,000	7,000	8,000	9,000
경북	5,000~6,000	7,000	8,000	9,000
경남	5,000~6,000	7,000	8,000	9,000
제주	6,000~7,000	6,000~7,000	8,000~9,000	9,000

* 자료: 보건복지부

□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식지원 현황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41)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과 관련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연계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에 아동급식 관련 항목이 포함되

4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어 있어야 하는바, 2023년까지 ‘아동급식 지원단가 준수율’ 지표가 있었으나(참고자료 2), 이 내용이 2024년에는 삭제된 상황이기도 함.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성장기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 공급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 사업이 2005년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은 재정당국과의 논의 선행이 필요하고, 이미 각 지자체의 단가 지원, 가맹점 현황 등 아동급식사업 운영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어 점검 및 실태조사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⁴²⁾이고, 기획재정부 역시 이는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도 교육청 및 지자체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며, 2024년 현재 전국 아동급식 지원단가가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최저 단가인 9,000원 이상으로 별도의 국가 지원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임.

42) 이외에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일반가구 및 저소득층가구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로, 특정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위해 표본을 설계하는 것은 곤란하고,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고 밝힘.

8. 학교 등 취업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절차 간소화 (정성국의원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 개정안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취업자등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⁴³⁾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 ⑥ (생략) <u><신 설></u>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 <u>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u> 1. 제1항제8호의 유치원 2.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교육기관
⑦ (생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4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⁴⁴⁾에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자등의 전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 경우 취업자등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력 조회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바,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한 신속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을 통해 아동 보호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특히, 최근에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 강사 등을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일괄 모집하여 각 교육기관에 파견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강사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함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교육기관 지원 인력을 총괄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일괄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각 아동관련기관(교육기관)의 장의 행정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44)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관한 법률」이 개정(2023. 4. 11.)되어 시행(2023. 10. 12.) 중에 있기도 함⁴⁵⁾.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학교 등 취업자등에 대한 신속한 아동관련 범죄 전력 확인을 통해 교육기관에서의 아동보호를 강화 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예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관계 부처 등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나,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예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
교육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 등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 경력 등을 조회하여야 하나, 학교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각종 교육활동과 학교 인력 채용이 많은 학기 초에 학교 업무 부담이 과다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8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은 조회할 수 없어 학교의 업무 부담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지속 요구한 사항임. 따라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학교에서 인력 채용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 고등·특수학교(155교)는 시교육청에서, 전 유·초·중학교(유 352원, 초 304교, 중 171개교)는 해당 교육지원청 각 1인이 업무처리 예정으로 업무 과중을 야기할 수 있으며,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제도 개선에 따라 학교 업무 경감 및 법 개정 효과가 유지될 것이므로 개정 불필요

4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1항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3. 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1항제21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문 의 처
02)6788-5500

[참고 1] '중사제한범죄' (김도읍의원안 관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

- 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幫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삭제 <2013. 4. 5.>
- ⑤ 삭제 <2013. 4. 5.>
-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제8장 벌칙 참조[제58조~제6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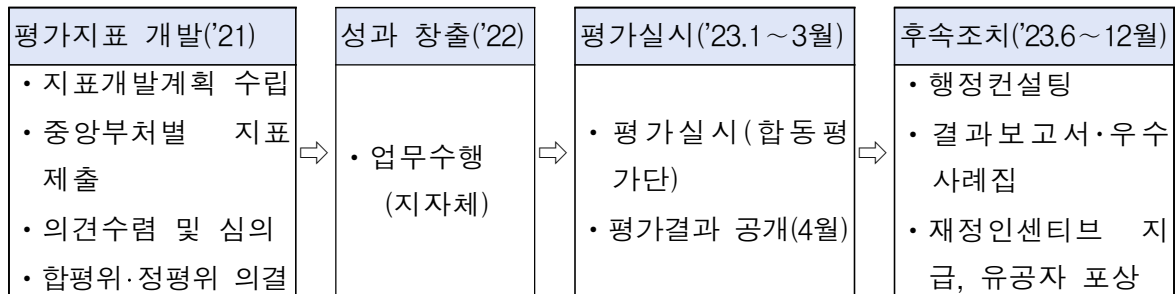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참고 2] 지자체 합동평가 개요 및 2023 아동급식 관련 평가지표(허영의원안 관련)

□ 합동평가 개요

- (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
- (목적) 국정운영의 통합성, 평가의 효율성 제고 및 지자체 부담 완화
- (대상)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市部와 道部를 구분하여 평가
- (평가체계)



□ 아동급식 관련 평가지표

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1.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지표 명	㉞ 아동급식 지원단가 준수율		
지표 성격	<국가 주요시책> -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 강화 필요 -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외식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동급식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지표 유형	정량	공통	정순 신규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아동급식 지원단가 권고액에 대한 지자체의 준수 수준 평가	
	평가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 지원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	
	평가목적	결식아동에게 균형잡힌 급식 지원을 위해 당해연도 급식지원단가를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으나, 권고금액 미달 등 지자체별 지원단가 편차가 발생하여 지자체의 적정한 급식 지원 노력 평가	
	기대 효과	아동급식 지원단가 권고 준수를 통하여 아동에게 영양있는 식사 제공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	
	기타참고사항	'05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	